

<별지 제11-2호> <신설 2005.4.1, 개정 2010. 1. 24>

(앞 쪽)

□ 보험중개사등록신청서					처리기간	
					30일	
상 호·명 칭						
대 표 자 성 명·주 소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
	주 소					
사 무 소 (법인본점) 주 소						
(우편번호 : -) (전화번호 : -)						
종 류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생명보험중개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손해보험중개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제3보험중개사						
영 위 하 는 다 른 업 무 의 종 류						
법인인 경우 이사 또는 사원 등의 현황						
성 명	주민등록번호	생년월일	성 별	주 소	비 고 (유자격여부)	
:	:	:	:	:	:	
사무소 설치 현황						
사무소 명칭	주 소		대표자명	비고(유자격여부)		
:	:		:	:		
보험업법 제89조제1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보험업감독규 정 제4-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날인 또는 서명) 금융감독원장 귀중					수수료	
					개인 : 50,000원 법인 : 200,000원 (다만, 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중개사 는 1,000,000원)	
※ 첨부서류 1.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이력서(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) 3. 정관·등기부등본·임원 및 보험설계사의 이력서(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) 4.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5. 임직원 명부 6. 주주명부				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